

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5. 12.(수) 10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(2010-27-111) (비공개)

2)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0-27-112)

- 오남석 전파기획관의 보고를 받고, 전파법 개정('09. 2. 6, 진성호 의원 발의)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전파법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①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(안 제36조제1항제2호)

-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(5년 이내 → 7년 이내)한 전파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,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
- 개정 「방송법 시행령」('10. 1. 26) 제16조제2항을 준용하여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※ 개정 「방송법 시행령」('10. 1. 26) 제16조제2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되, 시청자 권익 보호, 공적책임 실현 등을 위해 필요시 허가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

② 공공복리용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(안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, 별표7)

- 터널, 도시철도(지하), 건축물의 지하층에 개설하는 무선국 중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해서도 전파사용료를 면제
-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하는 지구국의 경우, 월 이용요금 수준에 비해 전파사용료가 과도하므로 부담의 경감을 위해 전파사용료를 면제
- ※ '07년~'08년,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는 위성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(요금 월 3만원, 분기별 전파사용료 2만원)

- 소형 어선이 조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156MHz대역의 무선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

③ 아마추어 무선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격제도 등 개선(안 제32조, 제105조, 별표 17)

- 일반인들도 기초 교육 이수만으로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을 신설하고,
- 외국 아마추어 무선국과 교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국의 출력을 상향 조정(500W이하 → 1kW이하)

④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(안 별표 23 및 별표 27)

-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,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액이 해당 무선국 운용제한처분이나 무선국 운용정지처분의 수준과 비례하도록 기준을 정비

< 과징금 정비 기준 >

운용정지/제한 기간	전기통신사업용 무선국 또는 방송국		기타의 무선국	
	운용정지	운용제한	운용정지	운용제한
1개월	500만원	250만원	200만원	100만원
2개월	1,000만원	500만원	400만원	200만원
3개월	1,500만원	750만원	600만원	300만원
6개월	3,000만원	1,500만원	1,200만원	600만원

⑤ 기타(안 제23조, 제78조 내지 제84조, 별표 8 및 별표 15)

- 전파법 개정('09. 3. 13, 구본철 의원 발의)으로 '전파정책심의위원회'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
- 이용요금 연체로 휴대폰 등 무선국 이용이 정지된 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 정비 등

사. 보고사항

1)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

- o 김준상 국장의 보고를 받고,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재보고기로 함.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함.

6. 폐 회 (11:45)

※ 10:50 정회, 10:55 속개